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곽상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74호)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안 제2조제3호 등)	3
2. 국내복귀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규정 (안 제17조의2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8.
3. 회부연월일 : 2021.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안 제2조제3호 등)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위탁생산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경우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것을 말한다. 가. ----- -----축소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

현행	개정안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신 설></u> 4.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u>설하는 것</u> 나. -----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신설·증설하는 것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u>기업</u>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u>기업</u>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 1. (현행과 같음) 2.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기업(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3. ----- -----기업(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현행	개정안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비수도권)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함으로써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2021년 9월까지 총 103개사가 복귀하는 등 실적이 높지는 않았으나 2017년 이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계
17	2	11	4	8	16	24	21	103

◦ 진출국가별 국내복귀기업 수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계
84	10	3	2	1	1	1	1	103

◦ 기업규모별 국내복귀기업 수

중소	중견	대	계
85	17	1	103

◦ 업종별 국내복귀기업 수

전자	자동차	주얼리	기계	금속	신발	화학	섬유	기타	계
20	17	12	9	10	8	7	6	14	103

◦ 복귀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수

전북	경남	충남	경북	부산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울산	대구	광주	강원	전남	계
17	14	13	13	12	10	6	4	3	3	3	2	2	1	103

주: 2021.9.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투자 자본의 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 공동화의 해소, 국내시장의 성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19년 12월 및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의 인정범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입지·인력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음.

[표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

구분	제정	2019년 12월 개정 ¹⁾	2020년 12월 개정 ²⁾
대상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추가	-방역·면역 관련 산업, 첨단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 필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추가
인센티브	-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보증, 생산성 향상 지원,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인력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지원 등 인센티브 개선
지원체계	-코트라 ^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창구 일원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 확대 등
기타	-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우선 지원 고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5호, 2019. 12. 10., 일부개정]

2)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이와 같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³⁾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국가 간의 이동제한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해외 직접 생산 이외에 해외에서 위탁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국내 생산(비수도권) 전환 시에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내복귀기업의 생산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연관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음.

다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해외에서 사업이 실패한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⁴⁾

3)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pp. 5-6

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0년11월17일)

소위원장 이철규 (전 략) 그런데 경쟁력 있는 기업,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 상 실패한 기업들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때 활성화될 수 있어 전반적인 투자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시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위탁 조달의 국내 생산 전환은 국내·외 생산 주체가 ‘해외진출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법의 취지를 이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4] 현행법 목적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면, 해외 위탁 생산 제품(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존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들어와서 다시 재창업하는 형식의 국내 유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되면 앞으로 누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기 해서 국내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겠는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는 없겠습니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 왔단 말이지요, 공급자로서, 국내의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공급도 지금 초과돼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턴하는 기업이 공급 라인에 다시 신규로 진입하면서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해 오던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도, 우리가 하나만 보고 뒷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략)

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⁵⁾ 해당 내용이 대안⁶⁾에 포함되지는 못하였고,

현재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국내복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340호)이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5] 유사 개정안 심사경과

의안번호	발의자	심사경과	주요내용
2111340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021. 7. 5. 발의 2021. 9. 7. 상정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국내복귀에 포함

5) [21006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4인)

[210129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5인)

6) [210594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국내복귀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周)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①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周)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칙 제2조(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유효기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어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표 7]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이에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3년 간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인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근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52시간을 넘는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법 제53조제4항),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송업, 보건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59조).

[표 8]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 헌법 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된 사항으로, 원칙 및 예외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이라는 법의과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근로자의 건강권, 일·생활 균형이라는 법의 간 비교형량, 국내복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규정할 경우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인 “근로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법에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내 복귀기업 종사 근로자도 동등하게 건강권을 보호받고 일·생활 균형을 누릴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56